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문성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518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문성호, 강석주, 구미경,
김용일, 김지향, 김태수,
김혜지, 민병주, 이종배,
정지웅 의원(10명)

1. 주문

- 1990부동산폭력단이 행했던 것처럼 가해자의 위력에 의해 피해자 스스로의 신고 및 소송이 불가능했던 기간을 공소시효 산정에서 제외하고, 조직적 폭력 범죄에 한해 고발 및 수사 착수 가능 기간을 일반 범죄보다 길게 설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
-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가해자의 위력에 의한 신고 불능 기간을 시효 정지 사유에 포함하도록 조항을 신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조직적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배제 또는 기산점 유예 조항을 신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해산되지 않은 조직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및 제3자 고발 특례를 명시
- 이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 모든 범죄가 아닌 1990부동산폭력단 사건 및 오양종과 그 일당의 행위와 유사한 조직적·지속적 위력이 확인된 중대 범죄로 특정함

2. 제안이유

- 1990년 보도를 통해 알려진 ‘부동산폭력단사건’은 당시 부동산업자였던 오양종이 폭력조직 동화파 수괴 최용섭과 결탁하여 서대문구 등 서울시 소재 건물주들을 향한 협박과 폭력행위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건물 3채를 헐값에 강탈한 사건임

- 1990년 11월,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오양종과 최용섭 등 관련 피의자 6명을 공갈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특히 오양종은 폭력 청부 혐의로 수배되며 건물주를 협박해 건물을 포기하게 만든 공갈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오양종은 보도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함
- 보도와 같이 해당 부동산 갈취가 불법적인 범죄수익이었음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 수익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 오양종과 그 일당은 기존 건물주의 미성년 자녀를 폭행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천억 재산을 불려 손자까지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아이러니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음
- 오양종과 그 일당의 행위와 같이 조직 폭력을 동원하여 미성년 자녀를 감금 및 폭행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정도로 끔찍한 행위가 이어져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과 같은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에 처한 상황이 확실하다면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폐지했던 것과 같이 합당한 시효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피해자가 객관적 장애로 인해 직접 나서지 못할 때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인 만큼 이를 비친고죄로 강화하고 고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대폭 연장하는 개정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형사소송법」, 「민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1990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부동산폭력단 사건’은 부동산업자 오양종이 폭력조직 ‘동화파’ 수괴 최용섭과 결탁하여 서울시 소재 건물주들을 협박하고,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100억 원 상당의 건물 3채를 헐값에 강탈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당시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오양종과 최용섭 등 관련 피의자 6명을 공갈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특히 오양종은 폭력 청부 및 공갈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며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동산 갈취는 명백한 범죄수익이었으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야 제정되면서 형법상 몰수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천억 원의 재산을 증식하여 자손 대대로 호의호식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직적 폭력을 동원해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원천 봉쇄한 경우, 이는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폐지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시효 완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반면, 가해자들이 범죄수익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정의의 공백은 반드시 메워져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국외 도피 등으로만 극히 좁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며 조직적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는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시간만 끌면 처벌을 면한다’라는 계산을 가능케 하며,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소시효 제도가 오히려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협박과 폭행으로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문화하여 사법 정의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66조 역시 개정이 시급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장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직 폭력에 의해 신체와 정신이 억압된 상태는 법률이 보호해야 할 명백한 ‘권리 행사 저지’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막아놓고, 시간

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가해자가 시효 뒤에 숨어 범죄수익을 향유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적 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야 합니다. 일반 범죄와 달리 범죄단체에 의한 폭력은 조직이 존속하는 한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범죄단체가 해산되거나 주범이 구속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도록 하여, 조직적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개정하여 고발인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형사상 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거대 악에 맞서는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위력에 눌려 직접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3자의 고발은 진실 규명의 유일한 통로이지만 현행 제도는 고발인에 대한 보호와 면책이 충분치 않아 공익적 고발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나, 1990년 부동산폭력단 사건과 같이 조직적·지속적 위력이 확인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적 정의가 법적 안정성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죄수익으로 대를 이어 부를 누리고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의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하나, 「형사소송법」 제253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제4항을 신설하여, “가해자의 협박, 폭행 또는 조직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유가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한다.

둘,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제3항을 신설하여, “반사회적 조직폭력 또는 가해자의 위력에 의해 권리 행사가 저지된 경우, 그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시효를 기산한다”라는 규정을 명문화한다. 또한, 가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 시효의 이익을 누릴 수 없도록 한다.

셋,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조직적 폭력 범죄에 한해 “범죄단체가 해산되거나 가해자가 구속되어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된 때로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한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

넷,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개정하여 고발인의 신원 보호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26. 3.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일동